

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1. 11. 9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10월 20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10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50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2001. 11. 6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종화)

가. 개정이유

- 이천종합운동장 신설에 따른 시설운영 관리 전담기구 및 인력의 보장 승인과
-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,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한시기구(1과)가 승인 되었고,
- 지방자치단체 기구운용의 효율성과 자치단체간 통일성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·명칭운용 등에 관한 지침 시달로 우리 시 기구명칭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현실여건에 맞게 기구를 조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<기구신설>

-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과 (존치시한 : 2002. 12. 31까지) → 안 제7조
-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(사업소) → 안 제18조

〈명칭변경〉

- 기획감사실 → 기획감사담당관 (안 제5조)
- 문화공보실 → 문화공보담당관 (안 제6조)

〈분장사무 조정〉

- 문화공보실 : 체육관련 제반업무 → 자치행정국(주민지원과)
- 문화공보실 : 시민회관운영에 관한 사무 →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

〈사업소 소재지 조정〉

- 산림공원사업소 : 이천시 중리동 187 → 이천시 관고동 356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윤순성)

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·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시기구 승인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가 조직운영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, 기구명칭의 부여에 있어 혼동사례 급증, 소관 업무의 기능과 성질에 부합되지 않는 기구명칭 부여 및 운영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, 기구설치운영에 있어 효율성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이 요구되고 있어 지침에 따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